

의안번호	2209086
의 퇴 인	한지아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9.
추 계 번호	25C1684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	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2 (보충연금)	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충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의2 (보충연금)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3조) 개정안에 따라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음
 -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%로 설정된 대상자 범위가 유지되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개정안 시행 후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대상자 비중이 늘어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자 비중이 감소할 경우에는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와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 정보 등이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(안 제8조의2) 개정안 시행 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개정 방향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현재 추계에 필요한 정보가 부재하여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합산되고 있으므로, 보충연금 역시 기존의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－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충급여로 추가 지급할 경우, 보충급여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한 보충급여액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만약, 보충연금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, 안 제8조의2제2항은 지급할 보충연금액 수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보충연금액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